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 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박능후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## 1. 의결주문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장기요양인정의 잦은 갱신으로 인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3. 18. ~ 4. 27.) 결과, 특기할 사항  
없음

##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6조제1항제3호”를 “법 제6조제1항제4호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1년”을 “2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.

별표 3 제1호라목1)을 삭제하고, 같은 목 2) 및 3)을 각각 1) 및 2)로 하며, 같은 표 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란 중 “신고하지 않거나”를 “변경지정을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”으로, “신고한”을 “변경지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“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5항”을 “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6항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.



없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497